

늦어진 방학...코로나가 바꾼 극성수기

휴가 시즌 7월 말 · 8월 초 → 8월 중순

다중이용시설 '기피'... 캠핑장 '인기'

하계 휴가 시즌도 코로나19 영향을 받고 있다. 통상 7월 말부터 8월 초가 극성수기인데 올해는 늦은 여름방학에 맞춰 8월 중순 이후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등교수업 지역에 따라 올 여름방학을 8월 중순으로 미루는 학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절반 이상이 8월 둘째 주부터 여름방학을 계획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도 학사일정 순연에 따라 대개 7월 중순부터인 여름방학을 8월 초·중순으로 미루고 있다. 8월 하순이나 여름방학을 계획 중인 학교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방학 기간도 학사진도 보강을 위해 1~2주로 대폭 줄어든다.

초·중·고 여름방학이 8월 중순으로 밀리자 자녀를 둔 직장인들은 이에 맞춰 하계 휴가를 짜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학원도 공교육 일정에 맞춰 여름방학을 계획 중인 곳이 많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38살 A씨는 "8월 10일부터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가정통신문을 받았다"며 "작년에는 7월 마지막주에 물놀이를 갔는데 올해는 해변이나 수영장이 좀 꺼려져서 휴가지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중학생·초등생 두 자녀를 둔 B

씨(47)는 "두 아이의 학원 방학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 휴가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며 "여름방학이 늦어지면서 학원방학도 그에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전이라도 교외로 나거나 가족들과 휴가를 즐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목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C씨(42)는 "학원수업 학습진도에는 여유가 있지만 휴원은 학교 방학에 맞춰 할 생각"이라며 "8월 둘째주에 방학인 학교가 가장 많아 그때 맞춰서 일주일 정도 나도 휴가를 다녀오려 한다"고 말했다.

휴가지로는 다중이용시설 대신 개인집족이 상대적으로 적은 캠핑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초등학생과 미취학 자녀를 둔 D씨(38)는 "코로나로 키즈카페 가기도 망설여진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곳이 마

땅하지 않다보니 최근에는 주말마다 캠핑을 가고 있다"며 "어느 정도 타인과 거리를 두면서도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어 수영장 보다는 안전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올봄 코로나 유행 때 연차를 많이 소진해서 여름 휴가를 따로 가기는 힘들 것 같아 주말 캠핑으로 아쉬움을 달랠 것"이라며 "요즘에는 가족 단위 캠핑족이 많아 좋은 자리 예약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캠핑과 차박 등 수요가 늘면서 캠핑용품 매출은 지난해 보다 최대 200% 이상 급증했다. 인터파크가 최근 3개월간 캠핑용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06%가 증가했다. '매트·침대'는 205% 매출이 증가했고, 캠핑의자·테이블(144%)과 텐트·그늘막(104%)이 뒤를 이었다.

조인호 기자

군복무 중 후임병 강제추행한 20대 선고유예 선처

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선고하지 않는 판결의 하나다.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병영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해 성적 자유뿐만 아니라 부대의 군기, 사기, 단결을 저하시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고, 피해자에게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며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 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군 복무기간 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무조건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총 184회에 걸쳐 798시간의 복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사회에 기여했다"며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고,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술값 문제로 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2심 징역 4년

술값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판결받았다.

2심 재판부는 "증거 등을 보면 A씨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이 상당하다"며 "A씨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A씨가 술값 부담 문제로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술값 지급을 거부하자 흉기를 쇼핑백에 담아 피해자가 있는 곳을 찾아갔다"며 "거기서도 술값 부담 문제로 디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술값 지급을 계속해 거부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 예인비 부풀리기 사례금 쟁기 공무원 집유 3년

선박 예인비용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편의를 봄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100만원, 추징금 1100만원을 판결받았다.

2심 재판부는 "증거 등을 살펴보면 A씨가 대금 과다청구의 편의를 봄 것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30일 오후 4시쯤 전남의 한 해운회사 사무실에서 예인비용 등 대금의 과다청구 편의를 봄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1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업체 관계자 B씨와 해외로 매각되는 C호의 선적 예인비 등을 부풀려 받은 후 그 차액을 나누기로 미리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에게 특정인을 소개시켜 준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고달픈 택배 기사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전국 택배노동자대회를 열고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작년 데이트폭력으로 형사 입건 9858명...신고 2만건 육박

2개월간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 운영

지난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가 1만940건으로 전년보다 약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과 상해 등 데이트 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이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최근 3년간 데이트폭

력 신고 및 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건수는 지난 2017년 1만 4136건, 2018년 1만8671건, 2019년 1만940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형사 입건 수는 2017년 1만 303명, 2018년 1만245명, 2019년

9858명으로 줄어들었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폭력과 상해 입건 자수가 70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범 등 기타(1669명), 체포·감금·협박(1067명), 성폭력(84명), 살인미수(25명), 살인(10명)이 그 뒤를 이었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오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봉우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문의 : junsol@junsol.com**